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19 0040 6895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650203-1****** 김용철	피보험자	135-83-00482 경기도 용인시장
보험가입금액	金 七百四拾六萬貳阡八百四拾 원整 ₩7,462,840-	보험료	₩152,090-
보험기간	2019년 01월 31일부터 2021년 01월 30일까지(731 일간)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주택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2.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용인 수지구 죽전동 472-6 번지. 공동주택(연립주택)신축공사(24세대) 담보기간 2019년 01월 31일부터 2021년 01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9년01월28일 계약금액 ₩1,658,407,860- 보증금율 0.45%

알아두셔야 할 사항

1.'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2019년01월28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김 상 택

증권 발급	대리점	청라대리점	안명숙 032-507-6927	
	지점	부평지점	김미향	032-521-0021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20190128000408S-0012-001

후면

보험약관 주요내용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 · 내란 ·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상서비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②**전국 영업지점**이나 보상심사 담당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이후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상심사 담당부서(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상센터**	**02-3671-8115**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 · '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19 0040 6896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650203-1****** 김용철	피보험자	135-83-00482 경기도 용인시장
보험가입금액	金 壹阡九百九拾萬九百 원整 ₩19,900,900-	보험료	₩608,370-
보험기간	2019년 01월 31일부터 2022년 01월 30일까지(1,096 일간)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주택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2.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용인 수지구 죽전동 472-6 번지. 공동주택(연립주택)신축공사(24세대) 담보기간 2019년 01월 31일부터 2022년 01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9년01월28일 계약금액 ₩1,658,407,860- 보증금율 1.2%

알아두셔야 할 사항

1.'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2019년01월28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김 상 택

증권 발급	대리점	청라대리점	안명숙 032-507-6927	
	지점	부평지점	김미향	032-521-0021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20190128000418 4-0012-001

후면

보험약관 주요내용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 · 내란 ·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상서비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②**전국 영업지점**이나 보상심사 담당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이후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상심사 담당부서(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상센터**	**02-3671-8115**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 · '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19 0040 6897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650203-1****** 김용철	피보험자	135-83-00482 경기도 용인시장
보험가입금액	金 壹阡貳百四拾參萬八阡六拾 원整 ₩12,438,060-	보험료	₩633,710-
보험기간	2019년 01월 31일부터 2024년 01월 30일까지(1,826 일간)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주택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2.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용인 수지구 죽전동 472-6 번지. 공동주택(연립주택)신축공사(24세대) 담보기간 2019년 01월 31일부터 2024년 01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9년01월28일 계약금액 ₩1,658,407,860- 보증금율 0.75%

알아두셔야 할 사항

1.'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2019년01월28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김 상 택

증권발급	대리점	청라대리점	안명숙 032-507-6927	
	지점	부평지점	김미향	032-521-0021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201901280004225-0012-001

후면

보험약관 주요내용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 · 내란 ·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상서비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②**전국 영업지점**이나 보상심사 담당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이후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상심사 담당부서(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상센터**	**02-3671-8115**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 · '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19 0040 6898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650203-1****** 김용철	피보험자	135-83-00482 경기도 용인시장
보험가입금액	金 九百九拾五萬四百五拾 원整 ₩9,950,450-	보험료	₩1,013,950-
보험기간	2019년 01월 31일부터 2029년 01월 30일까지(3,653 일간)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주택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2.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용인 수지구 죽전동 472-6 번지. 공동주택(연립주택)신축공사(24세대) 담보기간 2019년 01월 31일부터 2029년 01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9년01월28일 계약금액 ₩1,658,407,860- 보증금율 0.6%

알아두셔야 할 사항

1.'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2019년01월28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김 상 택

증권발급	대리점	청라대리점	안명숙 032-507-6927	
	지점	부평지점	김미향	032-521-0021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201901280004261-0012-001

후면

보험약관 주요내용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 · 내란 ·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상서비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②**전국 영업지점**이나 보상심사 담당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이후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상심사 담당부서(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상센터**	**02-3671-8115**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 · '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